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8. 10. 15. 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##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: 김 영 주 의원 등 7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- 회부일자: 2018년 10월 4일

### 3. 제정이유

최근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, 그리고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됨.

이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,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통일교육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5조)
-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재정지원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,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  
- 2018년도 들어 4.27, 5.26 1, 2차 남북정상회담과 6.12북미정상회담, 그리고 9.18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·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면서 종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임.
  
-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,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종전,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통일역량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됨.
  
- 안 제3조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안 제4조에 다양한 사업추진 계획을 명시한 것과 안 제7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한 것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 지원을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